

##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18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 2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CEN/TS 17342(유럽), CNF(캐나다), CCMC(캐나다), NCC(대만), VNEEP(베트남), CMMI 등급제도(국제), MIL-STD-901D(미국), BV043(독일), Halogen Free(미국), EHEDG(유럽), Gluten Free(미국), Visa PayWave(국제), MPU(미얀마)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지원가능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sup>(2)</sup>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 <sup>(1)</sup>	100,000	70%	50%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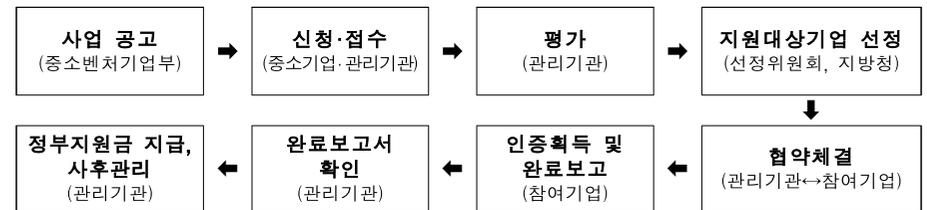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일(월) 09:00 ~ 2019년 8월 30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19년~)]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4. 평가 및 선정

□ 평가 : 서면 평가

- 관리기관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선정

- 지방청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기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 "첫걸음기업"이란 SIMS에서 15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기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을 정부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 문의처

###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벅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융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27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4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418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통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DR (공기정화물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 지원가능 인증추가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 지원가능 인증추가 (할로겐안전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국군장비규격)
	MIL-STD-901D - 지원가능 인증추가 (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I TSNA,MET,NNA,NSF,QAI,QPS,S GS,SWRI,TUVNorth,TUVPTL,TU VSUD,TUVPSG,UL19개기관)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엘(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양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 지원가능 인증추가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학제품인증)	CPNP (유럽화학제품등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품조성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 지원가능 인증추가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실)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선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 신규식품 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 지원가능 인증추가 (독일해군장비규격)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용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a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축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상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프랑스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융복합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MDA (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해자유규격협회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CU (러시아강제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 alDevices)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대만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 지원가능 인증추가 (대만통신기기인증)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신남방)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정보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 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I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 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기형식승인)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고어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품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구.CFDA- 중국의료기기허가등록)
	NMPA (구.CFDA-중국화장품허가등록)	SAMR (구.CFDA-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병원료허가 (신식병원료및첨가제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증명)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중국미생물수입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 지원가능 인증추가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 지원가능 인증추가 (캐나다화학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알려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RETIE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품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 지원가능 인증추가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품허가장제품등록	
호주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G-Mark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S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북방)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학품사전등록 (모로코화학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 지원가능 인증추가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성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인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인증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용인)	CMMI Lv3~Lv5 - 지원가능 인증추가 (소프트웨어개발역량평가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b>EAC (CU) (러시아화장품인증) (신북방)</b>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넷적합성테스트)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성유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b>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b>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 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관관련인증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적합성검사규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SB-IF (USB임플리먼트스포럼)
	Visa PayWave - 지원가능 인증추가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철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s://www.osha.gov/dts/otpc/nrtl/nrtlist.htm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9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9개기관: ARL, BAE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North, TUV PTL, TUV SUD, TUV PSG, UL)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	○	○	600	2,800	2,000	DoC-CEEL1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2개 시험	○	○	800	4,700	3,4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	○	○	2,200	8,2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4,900	3,500	CoC-CEMD2	
		의료기기 (MDD)	CLASS I	○	○	1,500	7,000	5,000	DoC-CEME1	
			CLASS II	○	○	5,000	21,000	15,000	CoC-CEME2	
			CLASS III	○	○	5,000	21,000	15,000	CoC-CEME3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21,000	15,0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4,100	2,900	DoC-CEETC1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7,000	5,000	CoC-CEETC2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900	1,300	B(추가코드)
	EU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400	1,900	1,300	DoC-ROHS
	REACH (EU)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7,000	5,0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21,000	15,000	CoC-RCH2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5,700	4,100	CoC-EMR	
CPNP	화장품	-		2,300	○	500	4,800	3,500	DoC-CPNP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중국	NMPA (구: CFDA)	의료기기	CLASS I	○	○	10,000	11,200	8,000	DoC-NPME1	
			CLASS 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2	
			CLASS I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3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500	○	1,800	3,600	2,600	DoC-NPC51	
			영·유아 제품 등록	500	○	3,000	4,500	3,2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500	○	3,000	5,300	3,800	CoC-NPCS3	
		CCC	공산품	중국강제인증	○	○	3,000	7,000	5,000	CoC-CCC
			소방제품		○	○	9,000	21,000	15,000	CoC-CCF
		중국자율 안전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증명명 라벨링	-	○	1,500	1,100	800	DoC-SRFD1	
	SAMR	식품	보건식품 등록	○	○	20,000	21,000	15,000	CoC-SRFD2	
			보건식품 허가	○	○	40,000	70,000	50,000	CoC-SRFD3	
	China REACH	화학물질	-	○	○	30,000	21,000	15,000	DoC-CRCH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4,200	3,0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5,000	CoC-FDME3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100	DoC-FDETC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800	11,200	8,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전자재 등 원재료	○	○	800	21,000	15,000	CoC-NRTL2	
	FCC	Declaration/ Verification Certificate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400	2,000	1,400	DoC-FCC1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1,600	5,600	4,000	CoC-FCC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1,000	16,800	12,000	A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800	5,700	4,100	CoC-PSE2
	일본무선 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6,000	4,300	CoC-JAMC
국제 / 기타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6,300	4,500	CoC-WPS
			HALAL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	○	8,000	11,200	8,000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5,000	CoC-IECX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	○	600	2,5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 (형식 승인)		○	○	1,200	5,600	4,000	CoC-SHIP2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3,900	2,8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7,000	CoC-ETC2	
고비용인증*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또는 70%비율로 지원됨
-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붙임 3】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표명명 (전산 업로드)
  - ※ 단,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를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 미인정
	인증획득건수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수출 성장성	수출 성장성 [(A-B)/B*100] A:전년도 신청기업 직접수출증가율 B:전년도 전체중소기업 직접수출증가율	- 제출생략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수출의지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 (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제출(18년, 19년 교육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전공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자격증 보유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수출 전담조직 보유	- 조직도(인력현황포함),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첨 제1-4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정책 고려 사항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타로그 사본1부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단독추진기업	- 제출생략
가점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교육연계지원 성공기업	- 제출생략
	타 수출사업 연계	- 제출생략